

# UCP와 eUCP의 주요내용 비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Main Substance in the UCP and eUCP

최석범(Choi, Seok-Beom)\*

목 차	
I. 서론	IV. UCP와 eUCP의 주요내용비교
II. eUCP의 도입배경과 의의	V. 결론
III. eUCP의 주요내용	※ 참고문헌

Key Word : eUCP, UCP, 전자제시, 전자신용장, 서류심사, 선화증권의 위기

### I. 서론

국제무역거래에서도 디지털혁명의 영향으로 큰 변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기존에 국제무역거래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던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는 불레로 선화증권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제시를 위한 UCP500의 부칙으로서 eUCP가 발효되었다.

전자무역시대를 전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선화증권의 전자화방안이 불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자신용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한 내용만을 따로 규정하여 이를 UCP500에 부칙으로서 추가하였다.

그동안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즉,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 II. eUCP의 도입배경과 의의

### 1.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선화증권의 위기와 eUCP의 도입배경

#### 1) 선화증권의 위기와 해결책<sup>1)</sup>

##### (1) 선화증권의 위기의 의의

근래 무역거래의 경우 고속선의 등장과 항해기술의 발달, 항만 인프라의 정비 등으로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 매우 빨라지게 되었다. 선화증권을 비롯한 선적서류는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목적지에 송부되기 때문에 본선이 목적지에 입항하여 물품이 양륙되어도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화인과 운송인이 화물의 인수나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선화증권의 위기(The B/L Crisis) 또는 고속선문제(The Fast Ships Problem)라고 한다.

##### (2) 선화증권의 위기의 발생요인

선화증권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표 1> 선화증권 위기의 발생요인

발 생 요 인	내 용
B/L의 상환증권성	수화인은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으면 운송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고속선의 등장	조선기술과 항해기술의 향상으로 선박이 기존보다 더 신속하게 운행
은행간의 서류우송관행	매입은행과 발행은행간에서 서류가 항공편으로 우송되는 관행이 그대로 존속
수출입업자와 은행 또는 운송인간의 서류우송관행	수출입업자와 은행간, 수출입업자와 운송인간의 서류우송이 인편배달이나 우편에 의해 이루어짐
수작업 서류점검	거래당사자, 특히 신용제공주체인 은행이 서류점검을 수작업으로 수행

자료: 최석범, “글로벌 전자무역시대에서의 불레로 선화증권의 기능과 문제점”,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8, p.185.

#### ①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

수화인은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으면 운송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고속선의 등장

조선기술과 항해기술의 향상으로 선박이 기존보다 더 신속하게 운행한다.

#### ③ 은행간의 서류우송관행

1) 최석범, “불레로 서비스와 불레로 선화증권에 관한 연구”, 「2000년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정보화시대의 국제상학의 새진로와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2000.5.26, pp.151-156.

매입은행과 발행은행간에서 서류가 항공편으로 우송되는 관행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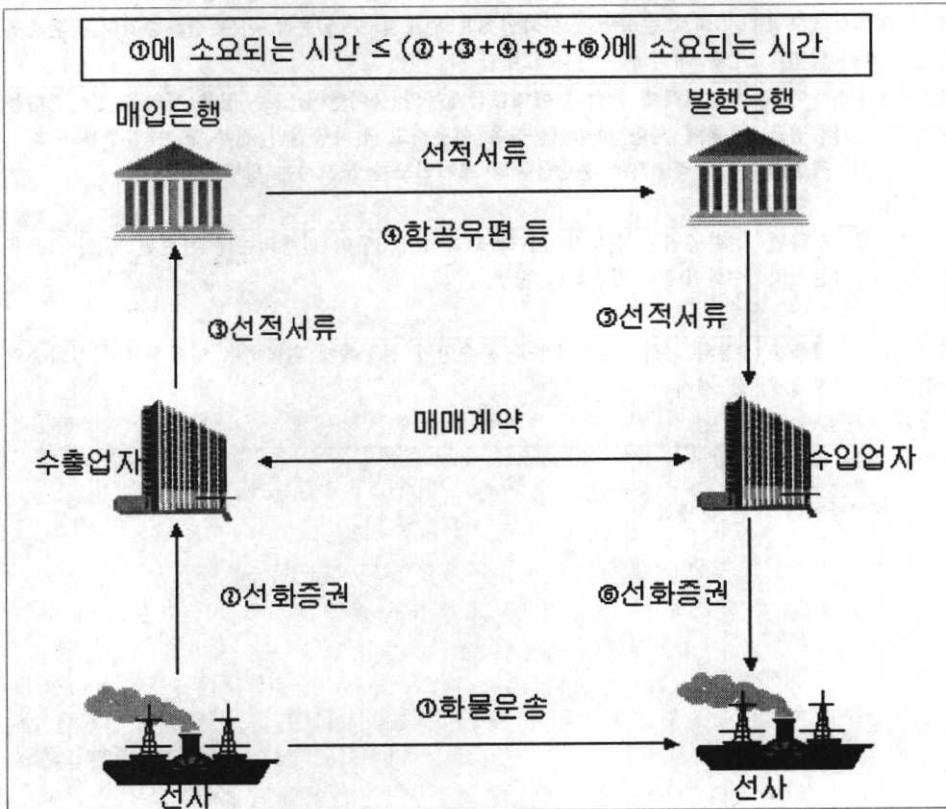
④ 수출입업자와 은행간 그리고 수출입업자와 운송인간의 서류우송관행

수출입업자와 은행간, 수출입업자와 운송인간의 서류우송이 인편배달이나 우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⑤ 은행에서의 수작업 서류점검

거래당사자, 특히 신용제공주체인 은행이 서류점검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선화증권의 위기



2) EDI이외의 해결책과 그 문제점

(1) EDI이외의 해결책

방 안	내 용
은행보증에 의한 보증도를 이용하는 방법	상환증권인 선화증권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비하여 수화인이 신용장발행은행이 연대보증한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을 이용하는 방법
단일보증(single guarantee)에 의한 보증도를 이용하는 방법	수화인이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취하지 않고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자신의 신용 즉, 단일명 서명(single name signature)에 의해 작성하고 관련한 보증장에 근거하여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인도하는 방법
해상운송장에 의하여 수화인을 수입업자로 하는 방법	해상운송장을 이용하여 수화인을 수입업자로 지정하면 운송물품이 도착하는 대로 운송인은 수화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데 이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
보증신용장을 이용하여 선화증권을 수화인에게 직송하는 방법	무역거래에 관련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책임을 인수한다는 은행에 의한 보증신용장을 이용하고 선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화인에게 직송하여 운송물품의 조기인도를 도모하는 방법
선화증권을 수화인에게 직송하는 방법	선화증권은 실무상 1선적에 대하여 3통이 발행되는데 관련된 3통중 1통을 수화인에게 직송하는 방법
선화증권의 1통을 본선의 선장에게 탁송하는 방법	3통의 선화증권중 1통을 운송인인 선장에게 위탁하여 양륙항에서 선화증권을 제시

(2) 각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점

방안	관련자의 위험			
	운송인	수화인	발행은행	매입은행
은행보증에 의한 보증도를 이용하는 방법	선화증권을 선의 취득한 제3자	보상채무를 이행	연대보증인으로 서 채무	운송인의 손해배상능력 부재시 대금회수 불가능
단일보증(single guarantee)에 의한 보증도를 이용하는 방법	상동	상동	여신담보의 목적이 처분	상동
해상운송장에 의하여 수화인을 수입업자로 하는 방법	불일치로 지급거절될 위험	지배권으로 다른 자에게 인도될 위험	물품인수후 수입업자의 도산된 경우 매입은행에 대한 대금지급의 무	무담보여신행위
보증신용장을 이용하여 선화증권을 수화인에게 직송하는 방법	채무불이행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위험	발행은행의 신용장 남용의 위험	무담보위험부담, 신용장남용의 위험	무담보매입위험
선화증권을 수화인에게 직송하는 방법	수화인의 물품인수후 지급거절될 위험	운송물품의 선의 취득의 위험	물품인수후 수입업자의 도산된 경우 대금회수불능	무담보매입
선화증권의 1통을 본선의 선장에게 탁송하는 방법	권리행사의 제한	제3자에게 인도가능성	대금회수불능	무담보매입

### 3) EDI에 의한 해결책으로서 전자신용장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서류문제로서 크게 부각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를 EDI로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용장을 EDI에 의한 거래로 하는 경우 선화증권을 포함하여 선적서류의 전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키게 된다.

그러나 EDI를 사용함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자체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어도 전송된 데이터가 각 당사자의 처리를 위해 체류되는 시간이 변하지 않아 결국 데이터의 송신측면에서, 수리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판단에 의해 다음 전송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변함이 없거나 당사자의 비영업일에 선화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의 유통이 저해되는 경우 선화증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전자신용장거래가 이용될 때에는 첫째, 당사자 특히 금융기관에서의 선적자료의 내용확인작업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여야 하고 둘째, 당사자 특히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에도 종래의 선화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이전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eUCP의 도입배경과 도입과정

### 1) eUCP의 도입배경

#### (1) UCP적용상의 한계

우선, 기존의 UCP의 경우 종이서류거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에는 그 내용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류(document), 서명(signature), 문면상(on their face)등의 표현은 전자신용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 (2) 전자상거래관행의 수용

EDI나 전자상거래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기존의 신용장거래에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SWIFT시스템에 의한 은행간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각 국가에서의 무역관련 당사자간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UCP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 (3) UCP의 개정이 아닌 부칙의 도입 필요성

기존의 관행이 변하여 전자화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선적서류의 전자화가 모두 완성된 것이 아니고 각국마다의 사정에 따라 선적서류의 전자제시의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에 의거한 선적서류의 전자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자신용장 통일규칙보다는 기존의 UCP를 보완하는 내용의 전자제시를 위한 부칙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2) eUCP의 개발과정

2000년 5월 24일에 파리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금융기술 및 관행에 관한 위원회(금융위원회)의 장래에 관한 테스크포스(Task Force on the Future of the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가 전자거래에 관한 더 많은 집중을 그 목적의 하나로써 설정하면서<sup>1)</sup>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1-22 양일의 회합에서 은행위원회에 의해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전자 부칙이 논의되었는데<sup>2)</sup> 이러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현행 UCP500과 종이기반의 신용장에 대한 전자적 등가물 즉, 전자신용장의 처리간의 연결고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UCP가 신용장업계를 위한 자율규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60년의 역사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기술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규칙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성이 명백하였다.

현재 종이에서 전자신용장으로 발전됨으로써 시장은 이러한 거래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ICC에 기대하고 있었다.<sup>3)</sup> 그 반응으로 은행위원회는 UCP에 대한 부칙(supplement to the UCP)으로

1) ICC, UCP500+eUCP, No.500/2, 2002, p.53.

2) ICC, Expert ponder e-supplement to documentary credit rules,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0/e\\_supplement.asp](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0/e_supplement.asp).

서의 적절한 규칙을 준비하기 위하여 UCP, 전자거래, 법적 문제 및 관련산업(예를 들면 운송)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천을 승인하였고 작업반에 의한 18개월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가 전자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의 통일관습 및 관행에 대한 새 부칙(new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또는 eUCP이다. 이 eUCP는 2001년 11월 은행위원회 회합에서 투표로 결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원래 2002년 6월 30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sup>4)</sup> 4월1일에 발효되었다.

### Ⅲ. eUCP의 주요내용<sup>5)</sup>

#### 1. eUCP의 범위와 주요개념

##### 1) eUCP의 범위

eUCP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와 전자기록 양자의 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화환신용장 통일관습 및 관행(1993년 개정 ICC발간 제500호)을 보충하는 것이고<sup>6)</sup> eUCP는 신용장이 eUCP가 적용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 UCP의 부칙으로서 적용된다.<sup>7)</sup> 즉, 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신용장에서 이를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곧 발효될 예정인 eUCP는 1.0판(version)인데 관련당사자들이 신용장거래에 eUC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eUCP를 삽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장에서 eUCP의 적용가능한 판(version)을 표시하여야 한다.<sup>8)</sup> 현재의 eUC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eUCP 1.0판을 참조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그 판수를 언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신용장이 개설된 일자에 또는 수익자에 의한 승낙된 변경에 의해 eUCP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변경일자에 유효한 판이 적용된다.

##### 2) eUCP와 UCP의 관계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 즉, eUCP 신용장은 UCP를 명시적으로 삽입하지 않더라도 UCP는 적용되는데<sup>9)</sup>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규정이 UCP의 적용과는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위까지 그 규정이 우선한다.<sup>10)</sup> 즉, eUCP와 UCP가 상충되는 경우에 eUCP가 우선한다는 점이다.

eUCP 신용장이 수익자가 종이서류 또는 전자기록의 제시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자가 종이서류만을 제시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UCP만이 그러한 제시에 적용되어야 하고 eUCP 신용장에 의거하여 종이서류만이 허용되는 경우 UCP만이 적용되어야 한다.<sup>11)</sup>

3) Philip Damas, 'E-shippers kick the paper habit,' American Shipper, February 2001, p.22.

4) ICC The Secretary General, Memorandum re: Updating UCP 500, 24 July 2001, p.1.

5) 최석범, "eUCP상의 주요내용과 UCP와 eUCP상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2권 1호, 2002.2, pp.162-167.

6) 제e1조 (a).

7) 제e1조 (b).

8) 제e1조 (c).

9) 제e2조 (a).

10) 제e2조 (b).

### 3) 용어 정의

eUCP는 용어정의에서 UCP와 관련한 용어와 eUCP에서의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UCP와 관련한 용어로서 eUCP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UCP를 적용하기 위하여 그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12)</sup>

우선, “문면상 보인다(appears on its face)” 등의 용어는 전자기록의 자료내용의 심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UCP는 종이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서류나 전자기록에서는 전면과 후면의 의미가 없으므로<sup>13)</sup> 문면상이라는 개념을 전자기록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류(document)”라는 용어는 전자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장소(place for presentation)”라는 용어는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를 의미하고 “서명하다(sign)” 등의 용어는 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류상의 “부기된(superimposed)”, “표기(notation)” 또는 “타인된(stamped)”의 용어는 부가적 속성이 전자기록에서 명백한 자료내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UCP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14)</sup>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은 우선, 전자수단에 의해 생성되고, 형성되고, 송부되고, 전송되고 수취되거나 저장된 자료이고 송신자의 분명한 신원 그리고 그것에 포함된 자료의 분명한 출처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은 상태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인증되는 것이 가능한 것 그리고 eUCP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에 대하여 심사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전자기록에 첨부되거나 이와 논리적으로 관련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자의 전자기록의 인증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에 의해 실행되거나 채용된 자료처리를 의미한다. “양식(format)”은 전자기록이 표시되거나 그것이 언급되는 자료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종이서류(paper document)”는 종래의 종이양식으로 된 서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취된(received)”은 전자기록이 정보시스템에 의해 수취되는 것이 가능한 양식으로 적용가능한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어떤 수취확인도 eUCP신용장에 의거하여 전자기록의 수리나 거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 2. 양식 및 제시

### 1) 양식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어야 하는 양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의 양식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전자기록은 어떤 양식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 2) 제시

11) 제e2조 (c).

12) 제e3조 (a).

13) 최석범,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 -해상운송서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6, p.204.

14) 제e3조 (b).

15) eUCP 제e4조.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장소를 규정하여야 하고 전자기록과 종이서류 양자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종이서류의 제시를 위한 장소를 또한 규정하여야 한다.<sup>16)</sup> 그리고 전자기록은 별도로 제시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제시될 필요는 없다.<sup>17)</sup>

eUCP 신용장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은행에게 언제 제시가 완료되는가를 알리는 통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완료 통지는 전자기록이나 종이서류로서 제공될 수 있고 그것이 관계되는 eUCP 신용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시는 수익자의 통지가 수취되지 않는 경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sup>18)</sup>

eUCP 신용장에 의거하여 전자기록의 각 제시와 종이서류의 제시는 그것이 제시되어야 하는 eUCP신용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제시는 수취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sup>19)</sup>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를 위한 규정된 만기일자 및/또는 선적일자로부터의 기간의 최종일자에 전송된 전자기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폐점된 것으로 간주되고 제시를 위한 일자 및/또는 만기일자는 그러한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취할 수 있는 다음 첫번째 은행업무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여전히 제시되어야 하는 전자기록만이 완료통지인 경우 그것이 은행이 전자서류를 수취할 수 있기 전에 송부된 경우 그것은 전신에 의하거나 종이서류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sup>20)</sup> 입증될 수 없는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sup>21)</sup>

### 3) 심사 및 거절통지

#### (1) 심사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거나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참조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 하이퍼링크나 참조된 시스템에서의 전자기록은 심사되어야 하는 전자기록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표시된 시스템이 심사시에 요구된 전자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불일치를 구성하여야 한다.<sup>22)</sup>

그 지정에 따라 지정은행에 의한 전자기록의 송부는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점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eUCP에 의해 요구되는 양식으로 심사하거나 양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양식으로 전자기록을 심사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에 대한 조건이 아니다.<sup>24)</sup>

#### (2) 거절통지

- 16) eUCP 제e5조 (a).
- 17) eUCP 제e4조 (b).
- 18) eUCP 제e4조 (c).
- 19) eUCP 제e4조 (d).
- 20) eUCP 제e5조 (e).
- 21) eUCP 제e5조 (f).
- 22) eUCP 제e6조 (a).
- 23) eUCP 제e6조 (b).
- 24) eUCP 제e6조 (c).

서류심사를 위한 기간은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취되는 은행영업일에 이은 첫 번째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sup>25)</sup> 서류의 제시 또는 완료통지를 위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서류의 심사를 위한 기간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은행이 완료의 통지를 수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sup>26)</sup>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는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을 포함하는 제시에 대한 거절의 통지를 제공하지만 전자기록의 처분을 위해 거절의 통지가 주어진 일자로부터 30일의 역일 내에 거절통지가 그 앞으로 제공된 당사자로부터 지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전에 반송되지 않은 어떤 종이서류를 제시인에게 반송하여야 하고 어떤 책임없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처분할 수도 있다.<sup>27)</sup>

#### 4) 서류

##### (1) 원본 및 사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에 대한 UCP 또는 eUCP 신용장의 요건은 한통의 전자기록의 제시에 의해 충족된다.<sup>28)</sup>

##### (2) 발행일자

전자기록이 특정 발행일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자기록이 발행인에 의해 송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자가 발행일자인 것으로 간주되고 수취일자는 어떤 다른 일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전자기록이 송부된 일자인 것으로 간주된다.<sup>29)</sup>

##### (3) 운송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이 선적이나 발송일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는 선적 또는 발송일자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전자기록이 선적이나 발송일자를 증명하는 부기를 포함하는 경우 부기일자는 선적이나 발송일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적인 자료내용을 보여주는 부기는 별도로 서명되거나 달리 인증될 필요가 없다.<sup>30)</sup>

##### (4) 제시후에 전자기록의 변형

발행은행,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의하여 수취되었던 전자기록이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은행은 제시인에게 통지하고 전자기록이 재제시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sup>31)</sup>

은행이 전자기록이 재제시되도록 요구하는 경우, 심사를 위한 기간이 중지되고 제시자가 전자기록을 재제시할 때 재개된다. 그리고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지정은행은 발행은행과 어떤 확인은행에게 재제시를 위한 요구통지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그 중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의 역일내에 재제시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어떤 최종시한은 연장되지 않는다.<sup>32)</sup>

25) eUCP 제e7조 (a)(i).

26) eUCP 제e7조 (a)(ii).

27) eUCP 제e7조 (b).

28) eUCP 제e8조.

29) eUCP 제e9조.

30) eUCP 제e10조.

31) eUCP 제e11조 (a).

32) eUCP 제e11조 (b).

5) eUCP에 의거한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책임의 추가적인 면책

전자기록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은행은 전자기록의 수취, 인증 그리고 확인을 위해 상업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료처리의 사용으로 수취된 전자기록에서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그 완벽성과 무변조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sup>33)</sup>

## IV. UCP와 eUCP의 주요내용비교

### 1. eUCP와 UCP관련조문의 비교

<표 2> eUCP의 구성 및 UCP500과의 대조

eUCP	관련 UCP500 조항
제e1조 eUCP의 범위	제1조 UCP의 적용
제e2조 eUCP와 UCP의 관계	제1조 UCP의 적용
제e3조 정의	관련 조항
제e4조 양식	제20조 서류발행인에 관한 불명확성, 제21조 부정확한 서류의 발행인 또는 내용
제e5조 제시	제42조 서류제시를 위한 만기일자 및 장소
제e6조 심사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e7조 (수리)거절통지	제14조 불일치서류와 통고
제e8조 원본 및 사본	제20조 (c)(ii)
제e9조 발행일자	제22조 서류의 발행일자
제e10조 운송(서류)	제23조-제30조
제e11조 제시후의 전자기록의 변조	제16조 전신송달에 대한 면책
제e12조 eUCP하에서의 전자기록제시에 대한 책임의 추가적인 면책	제15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 1) 적용범위

##### (1) eUCP

당사자들의 합의와 신용장에서의 명시에 의해 eUCP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가능한 판(version)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판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UCP가 UCP의 부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eUCP 신용장의 경우에는 UCP를 명시적으로 삽입하지 않더라도 UCP가 적용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UCP와 eUCP가 상충되는 경우 eUCP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 (2)UCP

33) eUCP 제e12조.

UCP가 신용장의 문언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적용가능한 범위까지 보증신용장을 포함하여)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하여야 하고 신용장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UCP가 모든 신용장 당사자들을 구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34)</sup> 명시적으로 그 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ICC 발간 500호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그 판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용어의 정의

### (1) eUCP

“문면상 보이다(appears on its face)”, “서류(document)”,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장소(place for presentation)”, “서명하다(sign)”, “부기된(superimposed)”, “표기(notation)” 또는 “타인된(stamped)” 이라는 용어를 전자제시에 적용하도록 재정의하고 있고 eUCP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즉,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양식(format)”, “종이서류(paper document)”, “수취된(received)” 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eUCP의 해석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2) UCP

UCP에서는 별도의 조항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신용장의 정의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외에는 각 조항에서 필요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즉, 제9조에서 취소불능 신용장<sup>35)</sup>, 취소불능 신용장의 확인<sup>36)</sup>, 매입<sup>37)</sup>, 무사고 운송서류<sup>38)</sup> 등을 각 조항에서 필요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3) 양식 및 제시

### (1) eUCP

eUCP는 제시되어야 할 전자기록의 양식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양식으로든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와 관련하여 eUCP에서는 전자기록을 제시하기 위해 제시장소를, 전자기록과 종이서류 양자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종이서류의 제시를 위한 장소를 또한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기록은 별도로 또는 동시에 제시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제시완료통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완료통지는 eUCP 신용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자기록의 각 제시와 종이서류의 제시도 eUCP 신용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의 시스템이 제시 만기일자 및/또는 선적일자로부터의 기간의 최종일자에 전송된 전자

34) UCP 500 제1조.

35) UCP 500 제9조 (a).

36) UCP 500 제9조 (b).

37) UCP 500 제10조 (b)(ii).

38) UCP 500 제32조 (a).

기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가 전자기록을 수취할 수 있는 다음 첫 번째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될 수 없는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UCP

원칙적으로 UCP에서는 은행은 어떤 서류의 양식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sup>39)</sup> UCP에서는 서류발행인과 관련하여 일류의, 저명한, 유자격의, 독립된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없는 한 관련서류를 제시된대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사시스템, 자동기기 또는 전산기기에 의하거나 탄소복사지로서 생성된 또는 생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의 표시와 필요한 경우 서명된 경우에는 원본의 서류로 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sup>40)</sup>

그리고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의 발행인과 서류상의 문언 또는 기재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하자가 없는 한 제시된대로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와 관련하여 UCP에서는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제시의 유효기일과 장소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선적일 이후부터 제시를 하여야 할 특정한 기간도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eUCP와는 달리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 등에 의하여 은행업무가 중단된 경우 업무중단에 반기가 도래된 신용장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sup>41)</sup>

### 4) 심사 및 거절통지

#### (1) eUCP

하이퍼링크나 참조된 시스템에서의 전자기록도 심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전자기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은행이 요구된 양식으로 심사하지 못하거나 양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제시된 양식으로 전자기록을 심사할 수 없다는 사유가 거절에 대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절통지와 관련하여 eUCP에서는 서류심사를 위한 기간은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취되는 은행영업일에 이은 첫 번째 은행영업일에 개시하고 서류의 제시 또는 완료통지를 위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서류심사를 위한 기간은 은행이 완료통지를 수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은행이 거절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기록의 처분기간인 30일의 역일내에 처분에 대한 지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제시인에게 반송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UCP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규정된 모든 서류를 심사함으로써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제조건과

39) UCP 500 제15조.

40) UCP 500 제20조 (b).

41) UCP 500 제17조.

일치하게 보이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일치성은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류는 은행에 의하여 심사되지 않고 서류에 대한 언급없이 조건만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은행이 서류거절을 서류접수 익일로부터 제7영업일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모든 하자사항을 기재하고 제시인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제시인에게 반송하고 있는지를 언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시인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보유하거나 반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서류

### (1) eUCP

복수의 전자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에 대한 UCP 또는 eUCP신용장의 요건은 해당 전자기록의 한통의 제시에 의해 충족되고 특정 발행일자가 없는 경우 발행인이 전자기록을 송부한 일자가 발행일자이고 수취일자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기록의 송부일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이 선적이나 발송일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는 선적 또는 발송일자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전자기록이 선적이나 발송일자를 증명하는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기일자가 선적이나 발송일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적인 자료내용을 보여주는 부기는 별도로 서명되거나 달리 인증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취되었던 전자기록이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은행은 제시인에게 통지하고 전자기록을 다시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심사를 위한 기간이 중지되고 제시자가 전자기록을 재제시할 때 재개된다. 그리고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지정은행은 발행은행과 어떤 확인은행에게 재제시를 위한 요구통지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그 중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의 역일내에 재제시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어떤 최종시한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2) UCP

“복본”(duplicate), “이중”(two fold), “2통”(two copies) 등과 같은 복수의 서류를 요구한 신용장은 서류 자체가 별도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통의 원본과 나머지 통수의 사본의 제시에 의해 충족된다.<sup>42)</sup> 서류가 신용장과 UCP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시되는 경우에 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일 이전일자의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UCP상에서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와 관련한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UCP 500 제20조 (c)(ii).

〈표 3〉 UCP상의 운송서류의 발행일자

구 분	내 용
해상선화증권 (제23조)	인쇄된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 표기된 경우에는 본선적재의 표기일
비유통해상운송장 (제24조)	인쇄된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 표기된 경우에는 본선적재의 표기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인쇄된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 표기된 경우에는 본선적재의 표기일
복합운송서류 (제26조)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 타인 또는 기타방법으로 발송 또는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
항공운송서류 (제27조)	발송일이 요구되고 그러한 일자의 특정표기를 명시된 경우 명시된 발송일
도로, 철도, 내수 로 운송서류 (제28조)	선적일 또는 타인된 수령일자
특사수취증, 우편수취증	일부된 선적일 또는 발송일

서류의 재제시와 관련한 UCP의 규정은 없고 서류심사기간의 중지와 재제에 대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신송달에 대한 면책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서류의 재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eUCP의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 5) 제시를 위한 책임의 추가적인 면책

##### (1) eUCP

전자기록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은행은 전자기록의 수취, 인증 그리고 확인을 위해 상업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료처리의 사용으로 수취된 전자기록에서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그 완벽성과 무변조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UCP

UCP상에서는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전신송달에 대한 면책, 불가항력, 피지시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면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과 전신송달에 대한 면책을 살펴보면 우선,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의 경우에는 UCP에서는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상에 규정되었거나 이에 추가된 일반조건 및/또는 특별조건에 대하여 어떤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행은 어떤 서류에 의하여 표시된 물품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송화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작위 및/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채무이행 또는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어떤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sup>43)</sup> 그리고 서류송달에 대한 면책의 경우에는 은행은 송달중에 어떤 통신문, 서신 또는 서류의 지연 및/또는 분실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또는 어떤 전신의 전송에서 발생하는 지연, 훼손 또는 기타 오류에 대하여 어떤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은행은 전문용어의 번역 및/또는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어떤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신용장조건들을 번역하지 않고 그것들을 전송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44)</sup>

## 2) eUCP의 역할과 주요 특징

### (1) eUCP의 역할

#### ① 전자무역의 촉진

전자무역이나 사이버무역에서 사용될 전자제시에 대한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전자신용장거래의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 신용장거래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사이버무역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전자신화증권의 문제도 불래로 신화증권의 도입으로 해결되었고 전자신용장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자제시에 대한 UCP500의 부칙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자신용장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 ② 전자신용장 통일규칙 제정에 대한 토대제공

궁극적으로 eUCP는 UCP의 부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전자제시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 신용장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전자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이 새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UCP는 이러한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에 이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 ③ 사이버무역모델도입의 촉진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제시의 방안이 제시되어 사이버무역모델이 급속히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 (2) eUCP의 주요 특징<sup>45)</sup>

#### 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에 한정

eUCP는 UCP상에서 전자제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규정을 새롭게 하였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eUCP는 현행 UCP상의 용어가 전자제시를 수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CP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 ② UCP와의 일관성유지

eUCP의 모든 조항은 전자제시와 관련한 특별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UCP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eUCP의 조항이 전자제시와 특별히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UCP와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종이서류와 전자양식으로의 제시간에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eUCP에서의 규정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eUCP신용장의 경우에는 UCP500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3) UCP 500 제15조.

44) UCP 500 제16조.

45) 최석범, “eUCP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Business, E-Trade, E-Market, E-Policy』,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2.5.11, pp.75-76.

## ③ 절충주의의 채택

eUCP는 절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eUCP는 제시가 완전히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와 전자제시의 혼합 즉, 일부 전자제시, 일부 종이서류의 제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관행이 발전되고 있지만 오로지 전자제시만을 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eUCP가 완전 전자화거래로 가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전자신용장자체의 운영방법에 대한 미언급

eUCP는 신용장 발행과 통지와 관련한 특정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용장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거나 통지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규명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시장 관습과 UCP가 오랫동안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UCP의 많은 조항이 종이 서류의 등가물의 전자제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UCP와 eUCP는 병행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UCP와 eUCP는 은행업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관습 즉, 국제표준은행 관습을 허용할 만큼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지속적인 개정의 고려

eUCP는 지속적인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즉, UCP는 UCP500에 대하여 특수하고 아마도 UCP의 다음 개정 즉, UCP600 이전에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로 개정되어야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eUCP는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과 이후의 개정을 허용할 수 있을 판번호(version number) 즉, 판1.0으로서 발행되었다.

## ⑥ 기술중립성 유지

eUCP는 기술중속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UCP는 특정기술과 개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채용되는 기술과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즉, 기술과 시스템과 독립적일 수 있도록 초안화되었다. 다시 말해 eUCP는 전자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정기술이나 시스템을 규명하거나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고 eUCP는 당사자들이 사용될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eUCP는 양식 예를 들면, 전자우편 또는 다양한 서류처리 프로그램들이 전자 메시지의 전송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자신들이 사용할 양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거래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sup>46)</sup>

## ⑦ 서류의 간접적인 제시허용

eUCP는 UCP와는 달리 서류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거나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참조에 의해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 ⑧ 수회 서류제시의 허용 및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의무부과

한번에 서류가 제시될 필요없이 수회에 걸쳐서 서류가 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시완료통지를 은행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UCP와 다른

46) Philip Damas, op.cit., p.22.

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제시후의 전자기록의 변형에 대한 규정

은행에 의하여 수취되었던 전자기록이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은행은 제시인에게 통지하고 전자기록이 재제시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제시된 후의 전자기록의 변형에 대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UCP와 비교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이상으로 eUCP의 제정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와 연관하여 조명하였고 eUCP의 주요내용과 이와 관련된 UCP500의 규정을 비교하였다. 그 동안 말로만 논의되어 전자신용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인데 불레로 선화증권의 도입과 전자제시를 위한 UCP500의 부칙으로서 eUCP가 발효됨으로써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무역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eUCP의 역할로서 우선, 전자무역의 사용이 크게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용장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자제시에 대한 UCP500의 부칙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자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UCP는 UCP전자신용장 통일규칙 제정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UCP의 제정취지가 UCP500의 부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전자신용장 거래에 대한 통일규칙으로서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eUCP는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에 대한 다리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eUCP는 사이버무역모델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eUCP가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제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무역모델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eUCP의 특징으로서 우선, eUCP가 선적서류의 전자제시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eUCP의 모든 조항은 전자제시와 관련한 특별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UCP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eUCP는 전자제시와 관련하여 절충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시가 완전히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와 전자제시의 혼합 즉, 일부 전자제시, 일부 종이서류의 제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eUCP는 전자신용장자체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신용장 발행과 통지와 관련한 특정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eUCP는 지속적인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판번호를 1.0으로서 제정하여 이후에 계속해서 개정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eUCP는 기술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기술과 개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eUCP는 서류의 간접적인 제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퍼링크나 참조된 시스템에 있는 기록도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덟째, eUCP에서는 수취 서류제시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에게 제시완료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eUCP는 제시후의 전자기록의 변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석범, “eUCP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Business, E-Trade, E-Market, E-Policy」,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2.5.11.
- 최석범,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 -해상운송서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6.
- 최석범, “eUCP상의 주요내용과 UCP와 eUCP상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 연구」, 제2권 1호, 2002.2.
- 최석범, “블레로 서비스와 블레로 선화증권에 관한 연구”, 「2000년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정보화시대의 국제상학의 새진로와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2000.5.26.
- 최석범, “글로벌 전자무역시대에서의 블레로 선화증권의 기능과 문제점”,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8.
- ICC, Expert ponder e-supplement to documentary credit rules,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0/e\\_supplement.asp](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0/e_supplement.asp).
- ICC, UCP500+eUCP, No.500/2, 2002.

## Abstract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500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